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30일(월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0년 9월 6일(월)

4. 제정근거

가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(법률 제10221호, 2010. 3.31)

제11조제6항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

제20464호, 2007.12.28 일부개정) 제2조

## 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,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# 관 계 법 령

##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[법률 제10221호, 2010. 3. 31]

###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

⑥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

[대통령령 제20464호, 2007.12.28, 일부개정]

제2조 (보조사업의 범위)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"보조사업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8.9.17, 2000.12.27, 2007.12.28>

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2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- 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사업
6.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